

민사서류 교재 개정내용 관련

본래 2021년 27회의 경우 종전교재로 수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교재 재고 부족등으로 인한 출판사 요청으로 일정을 바꾸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교재 개정은 형식적으로는 전면 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입증방법"이라는 용어를 근래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 "증명방법"으로 맞추고 그 기회에 "첨부서류 작성방법" 역시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 정리를 하다보니 전면개정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이 개정된 것은 25회 및 26회 법무사 기출문제를 추가한 것과 종전에 수록하였던 24회 시험답안 내용을 수정(천정 보수공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개정)한 것이 주된 부분이며, 그 밖에 13회 사해행위 가액배상 기출문제의 종전 답안내용 중 소가 부분을 수정(1억에서 1억 2천만원으로)한 것과 아울러 교재를 개정하는 길에 수업진행 중 많은 분들이 알려주신 교재의 오타 부분 등을 상당수 바로 잡은 것입니다.

위와같이 실제내용에는 큰 변동은 없어 종전교재로도 지장이 없으며, 개정내용 역시 이곳에 올리고 또한 수업진행시에도 별도로 파워포인트 자료를모두 올려 놓아서 종전교재로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증명방법...으로

이상과 같은 이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1.
- 2.
- 3.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차용증
-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1. 갑 제3호증 매매계약서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삭제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 1. 위 증명방법 각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 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2통

귀중

13 페이지

증명방법

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첨 부

| | |
|--------------|------|
| 위 입증방법 | 각 3통 |
| 소장부분 | 2통 |
| 송달료납부서 | 1통 |
|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 1통 |

| | |
|---------------|----|
| 1. 위 증명방법 | 3통 |
| 2. 영수필확인서 | 1통 |
| 3. 송달료납부서 | 1통 |
| 4.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 1통 |
| 5. 소장부분 | 2통 |

2000. 0. 0.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 **삭제** 귀중

나. 응용형

1) 이율의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참고 :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상대방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2) 1인의 피고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원고  동일 또는 상이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때

※ 참고 : 상대방에게 여러 개의 채권(대여금, 물품대금, 정산금, 양수금등)을 청구하고 각 채권 별로 이자등의기산일이 다른 경우 혹은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상대방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19 페이지

2) 1인의 피고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원고에게 동일 또는 상이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때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원고 병, 정, 무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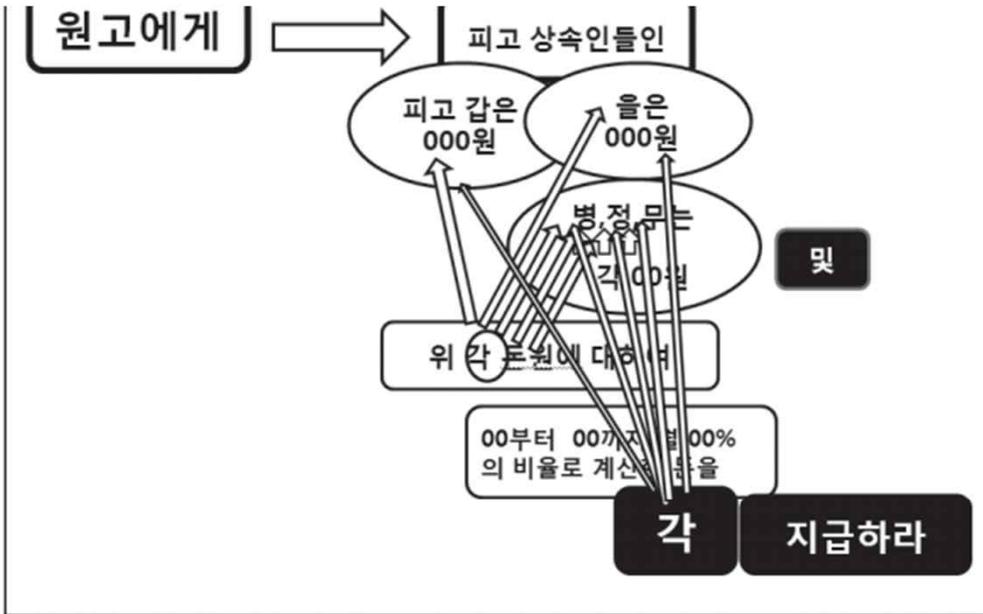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나 피고측 한 쪽은 19 **돈** 쪽은 여러 명이며 그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한사람인 원고나 피고를 앞에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 “각”자는 통상 중복 기재를 생략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0 페이지



3) 여러 피고별로 기간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금액 및 이율과 기간이 다른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5,000,000원, 피고 을은 8,700,000원, 피고 병, 정은 각 9,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기 **변할** 수 있다.

돈

▶ PART 02 금전청구 사건

다) 구체적인 여러 경우의 기재례

(1) 주채무자 1인과 연대보증인 여러 사람에게 대하여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① 피고 전원을 통틀어 「연대하여」로 묶는 것이 보통이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렇게 여러 사람 전원을 통틀어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끝 부분에 “각 지급하라”가 아니라 “지급하라”고만 기재한다.

②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은 2015. 1. 9. 부터, 피고 을은 2015. 2. 16.부터, 피고 병은 2015. 3.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삭제**다.
3. 제1항은 **삭제**다.

* “각”자는 “다 갚는 날까지”를 중복 기재하지 않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피고측이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청구취지 기재례

1) 상속채무금 7,000만원이고 상속인이 1인인 경우(변제기 2014. 12. 31. 가정)

1. 피고는 망 소외 이을남(650210-1017542)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삭제

2) 상속채무금 7,000만원, 상속인이 2인이며 상속지분 동일(변제기 2014. 12. 31. 가정)

1. 피고들은 망 소외 이을남(650210-1017542)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3) 상속인이 다수이고 상속지분이 일부 다른 경우

1. 망 정○○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김○○은 18,034,285원, 피고 정□□, 정△△은 각 10,2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8. 19.부터 2012.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각 상속받은

4) 피고측이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청구취지 기재례

- ① 피상속인 정○○이 원고에게 7,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 기○○(배우자) 저○○(자녀) 저○○(차녀)이 있고 마 자○○이 소자취나 지계조소이 언느

모두삭제

PART 02 금전청구 사건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송파등기소 2014. 10. 15.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마. 장래 이행(선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도로점용 사용으로 인한 장래의 부당이득 청구
 도로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함에 있어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 외에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까
 지 미리 청구할 경우 청구취지는 “~부터 피고의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까지 월 금 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기재한다.

Check Point

❖ 기발생분과 장래발생분을 나누어 청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등 미 0000 10 0 부터 별지무로 기재 등기상인 도로폐쇄에 의한 피고의

29페이지



이자는 당일부터 변제기까지만 발생하지만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이자채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본래 원본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의 기간이 같다.

사례 1 ✓

- ◎ 갑은 2013. 10. 11. 을에게 금 9천만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2년 후인 2015. 10.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을의 아들 병과 친구 정이 위 대여원리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여금의 이자는 매월 1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 그 후 을, 병, 정은 위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므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따라서 2015. 10. 10.까지의 이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2015. 10. 11.부터의 지연이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부분 이하에 아래내용 추가

을은 2015. 5. 10 이후 전혀 원리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다른 소멸시효 사유도 부존재한다고 가정하며, 2018. 12. 1 기준으로 판단할 것,

▶ PART 02 금전청구 사건

4) 위 사례에서 주채무자 이공방이 사망한 경우 기재례 추가

... 앞 부분은 위와 동일 ...

그러나 그 후 주채무자인 망 이공방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11. 26.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피고 이태원과 이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고시원은 망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나머지 제1, 2차 대금 130,000,000원 및 그 중 나머지 제1차 대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12. 28.부터, 제2차 대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피고 이태원, 이차원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고시원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 즉, 각 65,000,000원 및 그 중 각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각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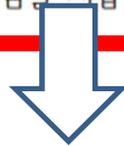
돈

※ T-118

-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특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제 의사 표시를 한 사실까지가 요건사실임.
- 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매매계약 해제일이 아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임(당일 포함, 민법 제548조 제2항, 성질은 법정이자).

다. 정산금 청구사건(청구원인 기재례)

- 1. 2014. 8.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그간의 자전거 부품외상 미수금을 7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이월남이 2014. 12. 31.까지 위 정산금을 지급하되, 연체할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월 1%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2.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월 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 대여금



1)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135,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월 1%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권리발생요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위의 동기, 연현 등을 기재하거나 계약내용 중 권리발생요건과 무관하여 쟁점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장황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다.

대여일인 2014. 7. 1. 부터 다 갚을때 까지 월 1%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부분 삭제하고
목차번호 수정

3) 주의사항

① 부담부분

- 다른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공동면책)하여야만 그 넘는 금액만큼 구상할 수 있음(민법 제448조 제2항, 대법원 1997.12.12, 96다50896 판결)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자기 부담부분을 넘지 않는 금액을 변제하였다도 그 변제금액에 다른 사람의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② 구상금청구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민법 제480조, 제481조)나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대위하는 것과는 구분함

③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산일은 변제일(공동면책일) 당일(민법 제425조 제2항, 성질은 법정이자).

손해는 구할 수 있다.

증명방법

6

절

입증방법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1. 2.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기재례

- 1. 갑 제1호증(차용증)
- 1. 갑 제2호증의 1(최고서)
2(특수우편물수령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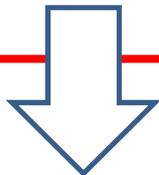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초본, 대표자증명서 등)과 당사자능력을 판단할 자료(정관, 규약 등)를 첨부하여야 하고, 소송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첨부서류의 기재요령 등

*** 기재례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3통(= 피고 수 + 1) |
| 1. 소장부분 | 2통(= 피고 수)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통 |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 1통 |



| | |
|---------------|-----------------|
| 1. 위 증명방법 | 각3통(= 피고 수 + 1) |
| 2. 영수필확인서 | 1통 |
| 3. 송달료납부서 | 1통 |
| 4.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 1통 |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통 |
| 6. 소장부분 | 2통(= 피고 수) |

차용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이민준 및 피고 박서연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이 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월 1%,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4. 5. 20. 부터 다 갚는날 까지 월 1%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김일남은 2014년 5월 20일 피고 1. 이민준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1%(매월 19일 지급) 변제기 2015. 5. 19.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2. 박서연은 위 대여 당시 원고 김일남에 대하여 피고 1. 이민준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피고 1. 이민준 및 피고 2. 박서연은 원고 김일남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월 1%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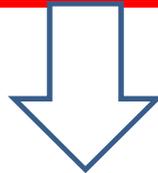
... 이하 생략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5(잠원동)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월 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4. 5. 20. 부터 다 갚는날 까지 월 1%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2014. 5. 20. 부터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월 1%의 이율로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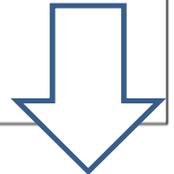
1. 사례

아래 내용을 읽고 김을동의 권리행사에 가장 유리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김을동[600212-12131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8, 109동 807호(반포동, 한양아파트), 전화 번호 02-872-9079, 전자우편 : kkd@lala.net)]은 송일남[(611221-1231234)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123, 5동 315호(장항동, 호수아파트)]에게 2015년 1월 25일 2,000만원을 월 2푼의 이자로 변제기 2015년 9월 29일로 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그런데 송일남은 그 후 운영하는 사업이 부진함에 의하여 김갑동의 수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2015. 10. 28. 자로 김갑동에게 유리한 소장을 작성하되, 소가 및 인지는 표지 상단 좌측에 그 내역과 함께 표시하시오.

※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인)으로 표시할 것.



| | | |
|-------------|-----------------|----|
| 2,000만 원 | 월 2% | 우측 |
| | 변제기 2015. 9. 25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월 2%의 약정이율로

인

1. 원고는 2015. 1. 2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 2015. 9. 29.로 하여 대여한 바 있습니다(갑 제1호증).
2.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당일인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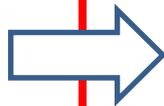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증명방법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2통
- 1. 소장부분 1통
- 1. 송달료납부서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 1. 위 증명방법 2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송달료납부서 1통
- 4.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5. 소장부분 1통

2015. 9. 28.

위 원 고 김갑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삭제

▶ “대여하였다”는 표현은 대여약정... 포함하는 의미임.

44 페이지 - 1사례와 2사례 사이에 - 아래 기출문제 새로 추가

2. 사례 - 제25회 법무사 시험기출문제

김상훈[주민등록번호: 701104-1122333,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전화번호: 010-1234-7777, 전자우편: ksh@kmail.com]은 2019. 9. 10.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져온 별첨 서류를 제시하면서 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적합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30점)

< 다 음 >

- 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하용주의 부탁을 받고 2017. 1. 1. 하용주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저와 하용주는 오랜 기간 함께 조기축구회 활동을 하였던 터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용주에게 다른 담보는 요구하지 않고 차용증 한 장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저와 하용주가 2017. 1. 1. 대여 당시 합의한 내용은 차용증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① 변제기를 2018. 12. 31.로 하고, ② 이자는 월 0.5%로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그달 말일에 후납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 저는 2017. 1. 1. 제 명의의 진민은행 계좌에서 하용주 명의의 유상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하용주도 저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습니다.
- 하용주는 2017. 1월부터 매달 말일에 꼬박꼬박 2억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용주는 2017. 12. 31.에도 12월분 이자 100만 원을 입금한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자가 밀린 적도 없고, 하용주가 새로 빌리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월 1.5%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하용주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 이에 저는 2018. 1. 1. 하용주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하용주도 저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위 차용증에는 ① 변제기를 2018. 12. 31.로 하고, ② 이자는 월 1.5%로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그달 말일에 후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저와 하용주가 합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 그런데 하용주는 기존 2억 원 외에 위와 같이 1억 원을 추가로 빌려간 후에 저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위 각 대여금에 대한 2018년 1월부터의 이자를 입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에 불안해진 저는 2018. 3. 20. 하용주에게 위 각 대여금의 이자를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하용주는 2018. 3. 27. 자신의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하용주는 그 이후로도 저에게 한 푼도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2018. 12. 3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9,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위 9,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들 어느 채무의 변제에 중당할 것인지에 대해 저와 하용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저나 하용주가 이를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 이후 현재까지 하용주가 저에게 지급한 돈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용주는 2018. 12. 31. 저에게 9,000만 원을 갚았는데, 위 날짜를 기준으로 제가 하용주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액은 모두 3억 3,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2017. 1. 1.자 대여금 원금 2억 원, ② 위 2억 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0.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200만 원, ③ 2018. 1. 1.자 대여금 원금 1억 원, ④ 위 1억 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800만 원의 합계액입니다.
- 따라서 2018. 12. 31.을 기준으로 위 3억 3,000만 원에서 하용주가 변제한 9,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201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변제중당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 취지에 맞게 소장을 작성해 주십시오.

- 한편, 2017. 1. 1.자 대여금 2억 원의 지연손해금율은 월 0.5%이고, 2018. 1. 1.자 대여금 1억 원의 지연손해금율은 월 1.5%로 서로 차이가 나니,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청구취지 제1항은 위 2017. 1. 1.자 대여금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취지 제2항은 위 2018. 1. 1.자 대여금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나누어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연손해금율의 산정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유의사항>

1. 2017. 1. 1.자 대여금에 관한 청구는 청구취지 제1항에, 2018. 1. 1.자 대여금에 관한 청구는 청구취지 제2항에 반드시 나누어 기재하십시오.
2. 하용주가 9,000만 원을 변제한 날인 2018. 12. 31.을 기준으로 변제중당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19. 1. 1.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하십시오(즉 청구취지 제1, 2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의 형식을 취하십시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할 경우 이를 적용하십시오. 2019. 6. 1. 이후에 제기된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경우 위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4.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
5. 별첨 서류들과 김상훈의 진술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김상훈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법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원고가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소장 작성일은 2019. 9. 20.로 할 것).
6. 김상훈이 언급한 사항 외에 다른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
7.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되,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별첨 서류들을 참조하여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도 소장에 함께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8.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납부할 '인지역'을 그 각 계산내역과 함께 기재하십시오.
9.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번 등은 모두 가공의 것이고, 별첨 서류들은 모두 시험용으로 만든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차용증 등에 날인된 부분은 모두 명의자의 진정한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봄).

차 용 증

— 금 이억 원(₩200,000,000) 정

채무자는 금일 귀하로부터 위 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청히 차용하고 약정대로 변제하겠습니다.

1. 변제기 : 2018. 12. 31.

1. 이자 : 월 0.5%(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그달 말일에 후납)

2017. 1. 1.

채무자 하용주 (770201-1987654)

서울 강남구 자곡로 337

전화번호 : 010-4321-9876

김상훈 귀하



이체확인증

| | |
|----------------|----------------------|
| 처리일시 | 2017. 1. 1. 14:02:56 |
| 이체결과 | 정상 |
| 출금/입금내역 | |
| 출금계좌번호 | 123-456-7890 |
| 내 통장 표시내용 | 하용주 자용금 |
| 수수료 | 0원 |
| 입금은행 | 유상은행 |
| 입금계좌번호 | 098-765-4321 |
| 받는 분 | 하용주 |
| 이체금액 | 200,000,000원 |
| 받는 분 통장 표시내용 | 김상훈 대여금 |

* 이상의 내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체확인증은 고객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의 참고용오르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일 (주) 진민은행



차 용 증

— 금 일억 원(₩100,000,000) 정

채무자는 금일 귀하로부터 위 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청히 차용하고 약정대로 변제하겠습니다.

1. 변제기 : 2018. 12. 31.

1. 이자 : 월 1.5%(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그달 말일에 후납)

2018. 1. 1.

채무자 하용주 (770201-1987654)

서울 강남구 자곡로 337

전화번호 : 010-4321-9876

김상훈 귀하



이체확인증

| | |
|----------------|----------------------|
| 처리일시 | 2018. 1. 1. 15:07:16 |
| 이체결과 | 정상 |
| 출금/입금내역 | |
| 출금계좌번호 | 123-456-7890 |
| 내 통장 표시내용 | 하용주 2차 자용금 |
| 수수료 | 0원 |
| 입금은행 | 유상은행 |
| 입금계좌번호 | 098-765-4321 |
| 받는 분 | 하용주 |
| 이체금액 | 100,000,000원 |
| 받는 분 통장 표시내용 | 김상훈 2차 대여금 |

* 이상의 내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체확인증은 고객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의 참고용오르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일 (주) 진민은행



변제 요청서

수신 : 하용주 (770201-1987654)
 서울 강남구 자곡로 337
 발신 : 김상훈 (701104-112233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 본인은 2017년 1월 1일 귀하에게 2억 원의 변제기 2016년 12월 31일, 이자 월 0.5%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귀하는 위 2억 원에 대하여 2017년까지는 매월 말일에 꼬박꼬박 약속한 이자를 입금해 주었으나, 2016년 1월부터는 이자를 전혀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편, 본인은 2016년 1월 1일에도 귀하에게 1억 원의 변제기 2016년 12월 31일, 이자 월 1.5%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2016년 1월부터 단 한 번의 이자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는 귀하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귀하에게 함께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담보도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넘도록 이자가 입금되지 않으니 불안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디 밀린 이자를 신속하게 입금하시고, 원금의 변제기인 올해 연말에 원금도 이상 없이 반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20일

발신인 김 상 훈



본 우편물은 2016-03-20
 제50332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서초우체국장



변제 요청서에 대한 답변

수신 : 김상훈 (701104-112233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발신 : 하용주 (770201-1987654)
 서울 강남구 자곡로 337

- 김상훈 사장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2017년 1월 1일과 2018년 1월 1일 등 2차례에 걸쳐 저에게 함께 3억 원의 빌려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그럭저럭 버려 오던 저의 경제 사정이 2018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이자를 입금하려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8년부터는 이자를 전혀 입금해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밀린 이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말까지는 약속한 대로 빌린 원금 3억 원도 모두 변제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니, 밀린 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27일

발신인 하 용 주



본 우편물은 2018-03-27
 제53278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강남우체국장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기간 : 2018/12/31 - 2018/12/31
 입출금 계좌번호 : 123-456-7890
 계좌명: 김상훈

| 거래일자 | 거래시각 | 거래종류 | 거래내역 | 거래금액 | 거래후잔액 | 상대은행 | 상대계좌 (의뢰인) |
|------------|-------|------|------|------------|-------------|------|---------------|
| 2018/12/31 | 11:54 | 입금 | 타행입금 | 90,000,000 | 207,865,430 | 유상은행 | 하용주 |

소 장

*** 소가 240,000,000원
산출내역 1) 1차 차용금 2억원
2) 2차 차용금 4,000만원
*** 인지액 1,015,000원
계산내역) 240,000,000원 x 40/10,000 + 55,000

원 고 김상훈 (701104-112233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전화번호 : 010-1234-7777, 전자우편 : ksh@kmail.com

피 고 하용주 (770201-1987654)
서울 강남구 자곡로 337
전화번호 : 010-4321-9876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월 0.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 2억 원을 변제기 2018. 12. 31. 이자 월 0.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1차 차용금"), 2018. 1. 1. 1억 원을 변제기 2018. 12. 31.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2차 차용금") 하였습니다.
2. 피고는 이중 1차 차용금에 대한 2017. 12. 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지내오던 중, 2018. 12. 31. 위 1,2차 차용금 중 어느 차용금에 변제 총당 한다는 합의나 변제총당의 지정 없이 9,000만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지급금") 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2018. 12. 31.기준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법정 변제총당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가. 1차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 까지 월 0.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200만원과 2차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800만원이 존재합니다.

나. 그런데 위 1,2차 차용금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고, 1차 차용금의 이율은 월 0.5%인 반면 2차 차용금의 이율은 월 1.5%이므로 2차 대여금 채무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변제이익 더 많은 채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지급금은 2차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우선충당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충당하는 경우에도 이자 채무 등 부수적 채무가 딸린 복수 채무의 법정충당의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위 조항에 따라 1차 차용금에 대한 위 약정이자 1,200만원 및 2차 차용금에 대한 위 약정이자 1,800만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잔액 6,000만원(=9,000만원-1,200만원-1,800만원)을 2차 차용금의 원금채무 변제에 충당하면 잔액은 4,000만원(=1억원-6,000만원)이 됩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월 0.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차 차용금 잔액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차용증 및 이체확인증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 차용증 및 이체확인증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2 변제요청서 및 변제요청에 대한 답변서
4. 갑 제4호증 입·출금 거래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2통
2. 영수필확인서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4.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5. 소장부분 1통

2019. 9. 21. 위 원고 김상훈(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4. 결 언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
니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 1. 갑 제2호증 영수증
-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 1.
- 2.
- 3.

47 페이지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2통
- 1. 소장부분 1통
- 1. 송달료납부서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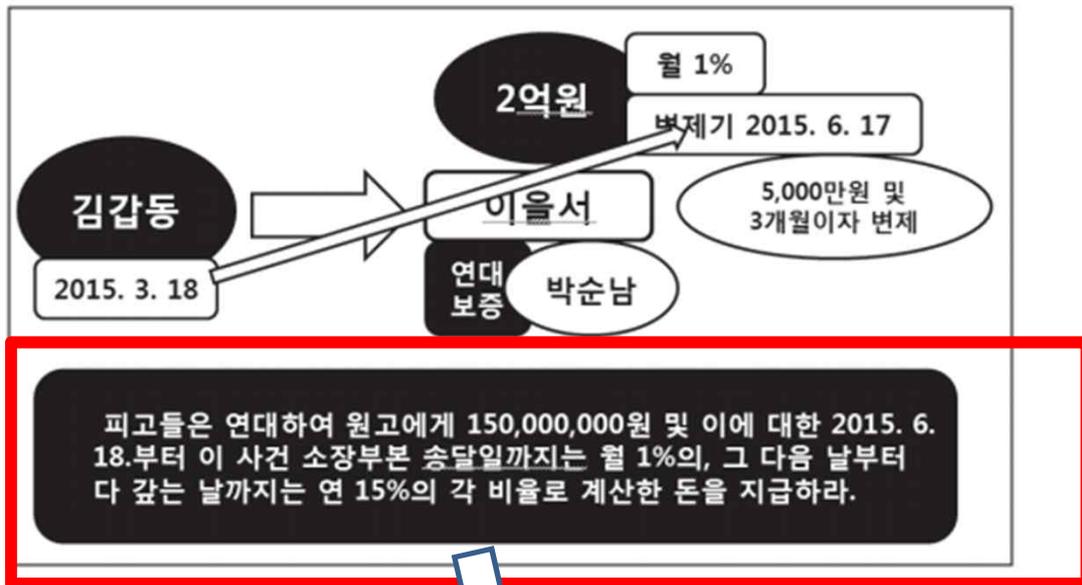
- 1. 위 증명방법 각2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송달료납부서 1통
- 4.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5. 소장부분 1통

2013. 9. 28.

- 위 원 고
- 1. 정 (인)
 - 2. 술
- 숙은 미성녀자이므로



삭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0 페이지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첨 부

증명방법

1. 위 입증방법 각 3통
1. 소장부분 2통
1. 송달료납부서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 위 증명방법 3통
2. 영수필확인서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4.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5. 소장부분 2통

2015. 10. 7.

위 원 고 김갑동 (인)

삭제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3. 9. 1. 피고 박대철에게 3,000만원을 이자 월 1%(연체이자는 월 2%), 변제기 2014.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 홍숙자는 위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박대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는 월 1%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월 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홍숙자는 피고 박대철이 원고에게서 빌리는 3,000만원에 대해 자기가 보증한 일도 없으므로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부부 사이이고 2013 2월

약정이율인 월 1%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6 페이지

보나 피고 홍숙자 역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차용증
-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증명방법

56 Par 02 금전청구 사건

- 1.
- 2.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 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송달료납부서 1통
- 4.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5. 소장부분 2통

2014. 9. 27.

위 원고 김선해 (인)



삭제

▶ 답안례

소 장

*** 소 가 130,000,000원

*** 인지대 575,000원

내역) $130,000,000원 \times 40/10,000 + 55,000원$

*** 송달료 181,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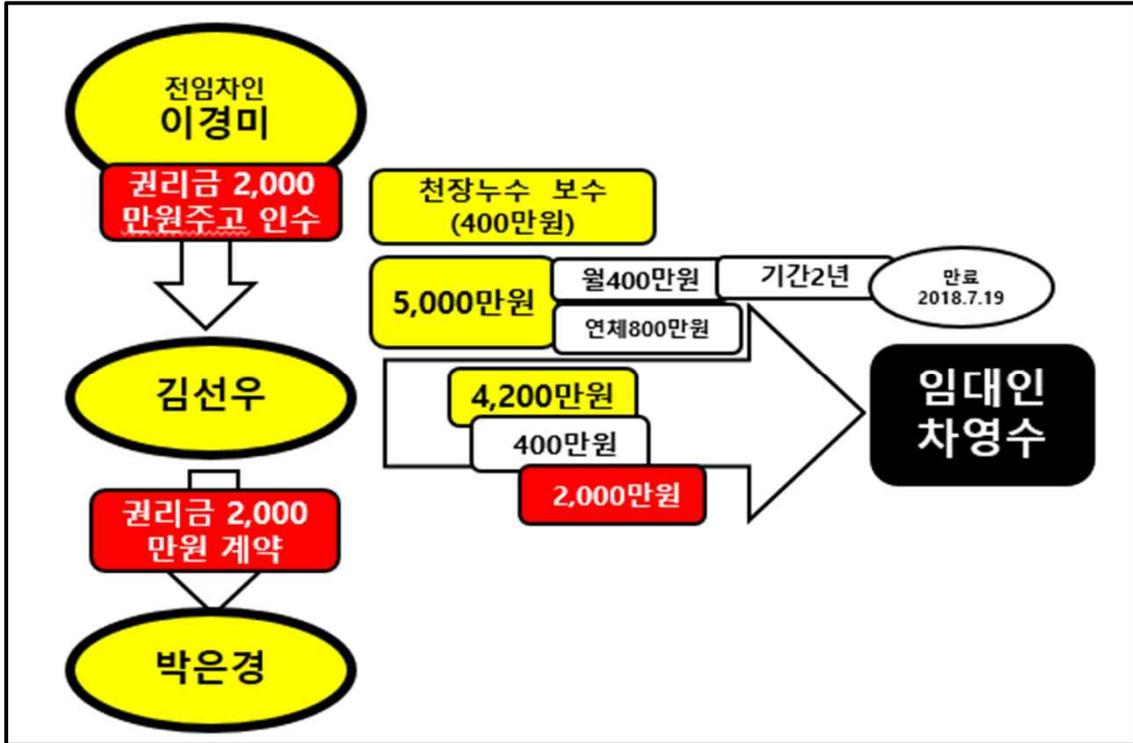
내역) 4인 \times 15회분(1회분 3,020원)

원 고 김안습(651125-1213145)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8, 201동 117호(반포동, 청구아파트)
전화번호 02-872-9079
전자우편 kkd@lala.net

피 고 1. 이태원(750818-1789019)
2. 이차원(800106-1789020)
피고 1, 2의 주소 서울 종로구 삼청로9길 26(삼청동)

삭제

**68-72 페이지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모두 교체수정**



▶ **답안례**

소 장

*** 소 가 66,000,000원
 내역) 1) 임차보증금 42,000,000원
 2) 필요비 4,000,000원
 3) 손해배상 20,000,000원
 *** 인지액 302,000 원
 내역) 66,000,000원 × 45/10,000 + 5,000

원 고 김선우 (680529-1325114)
 서울 서초구 중앙로 2
 전화번호 : 010-1234-1600, 전자우편 : ksw@kmail.com

피 고 차영수 (551211-1525312)
 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5 2동 202호(대치동, 대치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6. 7. 5. 소외 이경미가 운영하는 커피숍 '카페로'를 2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위 이경미에게서 인수하고, 같은 날 위 '카페로'가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400만원, 임차기간 2016. 7. 19.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리고 원고는 위 상가를 인도받은 다음 피고의 동의를 얻어 2016. 7. 25. 400만원의 천정누수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3. 그 후 원고는 2018. 5월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7. 19. 기간만으로 종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였으며, 원고의 연체차임은 800만원(2018. 4월과 5월)에 이릅니다.
4. 한편,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고 피고를 설득하여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300만원에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광고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2018. 7. 5. 위 상가를 새로이 임차하려는 소외 박은경과 사이에 권리금 2,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8. 7. 19.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갑자기 보증금 1억원, 월차임 6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위 상가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무산되어 원고는 권리금 2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3호 및 4호와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위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4천2백만원(=5천만원-800만원)과 위 천정보수공사에 소요된 필요비 4,000,000원 및 권리금회수 손해금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증명방법

1. 갑 제1호증 상가임대차권리금계약서
2. 갑 제2호증 상가임대차계약서
3. 갑 제3호증 등기사항증명서
4. 갑 제4호증 영수증

첨부서류

- | | |
|-----------------|------|
| 1. 위 증명방법 | 각 2통 |
| 1. 영수필확인서 |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 1통 |
| 1. 소장부분 | 1통 |

2018. 9. 15.

원고 김선우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참고의견

천정보수비용 400만원의 청구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부분인바, 종전 답안과 달리 이 금액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종전 답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비록 주어진 증거자료인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해보면 원상복구 조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장과 증거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례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질문지에 김선우가 언급한 사항 외에 다른 쟁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소장을 작성하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가능하다면 권리금과 보수비용도 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필요비는 유익비와 달리 이를 지출한 때(2016. 7. 25)부터 청구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를 청구한 것이 없어보이므로 지출한 다음날부터 그간의 지연손해를 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기에 편의상 다른 청구와 동일하게 묶어서 임대차만료일 다음날부터 모두 함께 청구하는 것으로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다만, 이 천정보수비용과 권리금회수 손해배상금 부분은 정확한 지연이자 기산시점에 대하여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이을병

위 물품대금 100,000,000원

동대문시장에서 “갑”과 “을”은 같은 시장에
서 “럭셔리스포츠”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소매업을 하는 피고 이을병과의 사이에, 2010. 6. 7.까지
피고 이을병에게 농구공(제품번호 : VS-100) 5,000개를 개당 20,000원씩 총 대금 100,000,000원
에 납품하고 그 납품 완료 즉시 이을병의 계좌로 위 농구공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0. 6. 7.
피고 이을병에게 위 농구공 5,000개를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이을병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 박병무에 대한 어음금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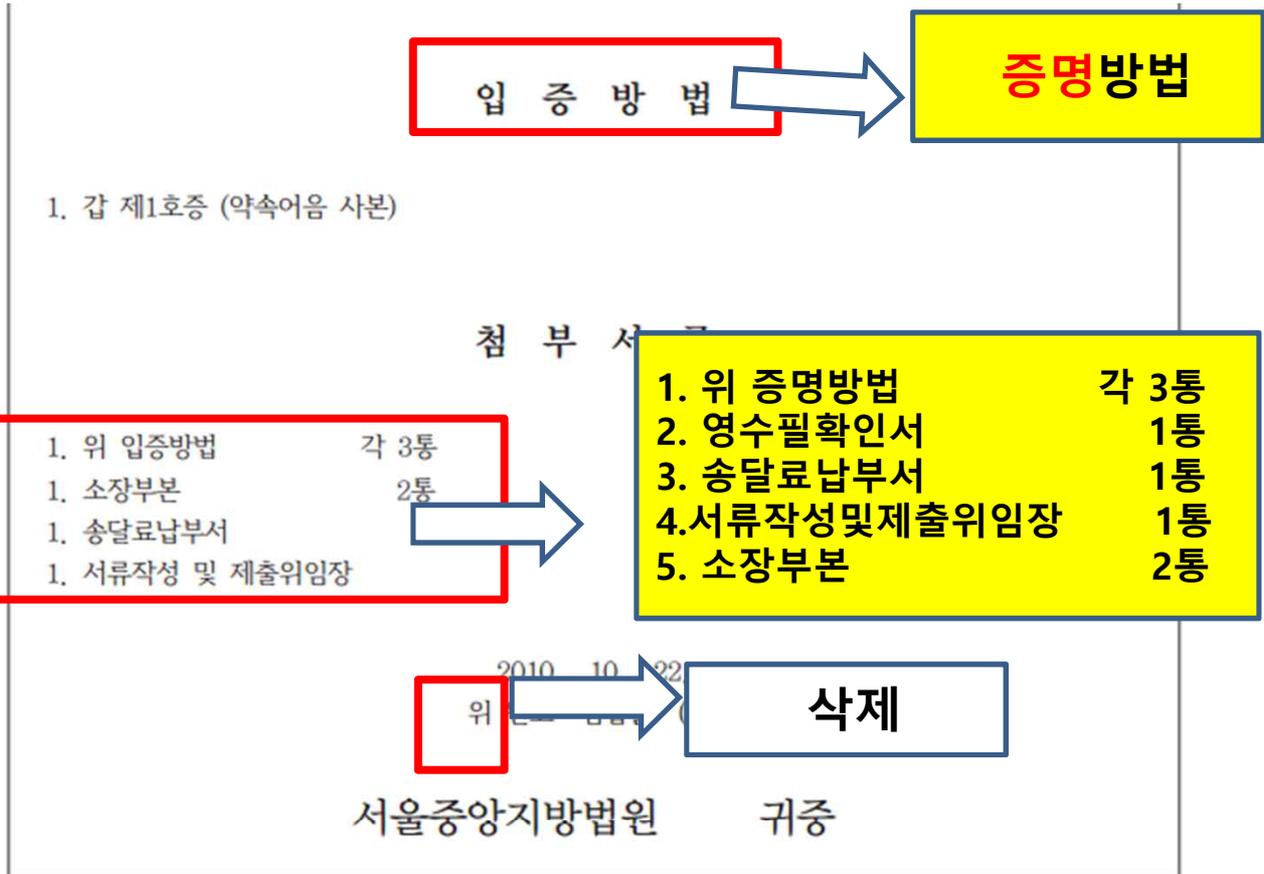
였으나 박병무와 피고 박병무는 위 어음의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은 자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보충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합한 것이므로 피고 박병무는 약속어음을 보충하더라도 제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할 방법이 없지만 약속어음의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 피고 박병무에게는 변론종결시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박병무의 주장은 이유없습니다.

3) 그러므로 피고 박병무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행일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제시한 날(2010. 6. 15)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 언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 이을병에게는 물품대금으로 청구하고(이을병도 배서인이기는 하지만 최무기처럼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라서 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박병무는 어음책임을 구하므로 “합동하여”가 아니라 “공동하여”로 청구를 함.

76 Part 02 금전청구 사건

이 부분에 아래내용 추가

▶ 민법 제587조에 의하여 대금지급에 관한 기한약정이 따로 없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박병무에게 2010. 6. 16부터 이자를 구하는 것으로 작성함.

1 절 병합청구 및 상속사례와 청구취지

조성길

1. 사례

김갑동은, 2015. 2. 15. 이율서로부터 위 이정삼이 발행하고 최정복이 제1배서인으로 배서한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 2015. 4. 15.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배서양도받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2. 4. 16.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 한편 이율서가 위 어음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김갑동이 2015. 8. 11. 이율서를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그 자리에 있던 위 이정삼은 박기철과 공동하여 김갑동에게 변제를 약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갑동은 치료비 700만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음. 그 후 2015. 10. 10. 그의 모친인 조성숙과 처인 윤혜진 아들 위 이정삼 및

지급기일인 2015. 4.15....로 수정

▶ 답안

1. 원고에게,

- 가. 피고 이정삼, 조성길은 합동하여 35,000,000원 및 위 피고들과 합동하여 위 금원 중 피고 윤혜진은 15,000,000원 피고 이남숙은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4. 1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이정삼, 박기철은 공동하여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돈...으로

2. 사례

위 5) 내용과 같이 다툼 경우, 이를 염두에 두고 승소가능성 있는 금액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 답안례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인석, 이성호는 연대하여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이인석, 이성호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피고 박영신은 30,000,000원, 피고 이인철은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이인석, 이성호는 공동하여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5.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이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으로 수정

-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같이 확정기한을 변제기로 정한 채권은 그 발생일이 아니라 확정기한이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지해하므로 변제기 2011. 6. 30부터 2014. 8. 1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물품대금 양도사례

1. 주유소를 운영하는 소외 박추병은 2008. 3. 1. 동대문 평화상가에서 의류도매상을 운영하는 피고 이하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 2008. 4. 30.로 정하여 빌려준 적이 있고, 원고는 2008. 5. 15. 위 박추병에게 5천만원을 이자율은 월 1%로, 변제기는 2008. 11. 30.로 정하여 빌려 주었는데 위 박추병은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09. 9. 9. 원고에 대한 위 돈 5천만원 (2008. 5. 15.자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조로 자신이 피고 이하유로부터 받을 위 돈 5천만원 (2008. 3. 1.자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피고 이하유에게 자신이 이하유로부터 빌려온 위 돈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의 총액 5,050,000원 (2008. 5. 15.자 대여금 5,000,000원 + 이자 50,000원)을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2008. 5. 1.부터 이사 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피고 이하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이사 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율로 계산한...으로 수정

라. 이익을 유보하지 않은 승낙 관련 사례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토지)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2통

위 2011. 9. 19. (일)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110 페이지

목 등에 대하여는 「수거」, 분묘에 대하여는 「굴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비정착물에 대한 제거를 구할 때에는 「취거(取去)」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2. 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표시

가. 토지 인도의 경우

- 1) **등기부상 표** ← **등기기록상...으로 수정** → **장고 등기부상**
의 표시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표**에 **등기부상 표** 시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

111 페이지 위쪽

2.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행정구역과 지번의 표시가 소장이나 판결문상에서 주소지 등을 기재하는 방식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예컨대, 서울특별시, 00번지 “도”의 생략 등), 소장이나 판결에서 부동산을 표시할 때에는 전술한 주소지의 기재방식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등기기록상...으로 수정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대 50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대지”라고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기재례 2)

111 페이지 아래쪽

나. 건물의 인도 또는 철거의 경우

1) 역시 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대지의 지번(지목, 면적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만, 건물철거 이외에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지목과 면적도 표기한다) 및 건물의 구조(00조 00지붕), 층수(단층, 2층 등), 용도(주택, 창고, 영업소), 건축면적(00평 또는 00㎡)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1층 150㎡, 2층 120㎡, 3층 100㎡ 옥탑 10.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모두 아래내용으로 수정교체

등기기록상의 표시에 따라 대지의 지번(지목, 면적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만, 건물철거 이외에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지목과 면적도 표기한다) 및 건물의 구조(00조 00지붕), 층수(단층, 2층 등), 용도(주택, 창고, 영업소), 건축면적(00평 또는 00㎡)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건물의 부동산 등기기록 표제부의 방식에 따라 지번주소만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 및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되, 병기할 경우 당사자 등 주소 기재방식과는 달리 지번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괄호안에 도로명, 건물번호를 차례로 기재한다.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2 (명달로 22길 2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1층 150㎡, 2층 120㎡, 3층 100㎡ 옥탑 10.6㎡를 인도하라.

112 페이지 위 부분

▶▶▶▶ PART 03 인도·철거사건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잡종지 150㎡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지붕 단층 자동차 수리점 120㎡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기록 표지에 따라 지번주소만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 및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되, 병기할 경우 당사자 등 주소가 달라 지번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괄호 안에 도로명, 건물번호를 차례로 기재한다

- 2) 만약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때에는 “등기부상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표시는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경우, “현황”으로 표시하고, 건물번호는 등기부상 표시로 족하다.

이 부분 모두 삭제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건축물대장등본 등(소가산정 자료)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2통

2014. 9. 28.
위 원

삭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2통

위

2011. 9. 19.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시금인 시금이고, 그 이후러 시금할 인어 시금이 많았음. 커적인기 김채수에게 누시데 시금러 지급을 독촉할 때마다 임채수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잠시만 기다려 주면 밀린 차임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 의뢰인은 소개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임채수가 미리 주점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기간 개시 이전에 위 점포를 인도해 주었음은 물론이고, 임채수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에도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으나,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1. 9. 22. 및 같은 해 10. 21. 등 한 차례 임채수에게 서면독촉을 하였는 바, 그럼에도 임채수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음에 따라 임채수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이상 임채수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같은 통지서가 2011. 12. 5. 임채수에게 도달하였음.

3개월 이상...으로 수정

의뢰인의 위 진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고, 2013. 9. 28.자로 의뢰인에게 문제를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시오(다만, 김수현에 대한 문제는 추후 별도로 처리할 예정임). 소장에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되 그 밖에 자연적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고 장황하게 기재하지 말며, 날인은 ㉠으로 표시하시오. 또한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첨부인지액 및 송달료를 기재하시오(소가와 인지를 계산한 내역도 기재할 것).

- ▶ 별지 1항 기재 건물 중 1층 150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은 200,000,000원이고, 매매시가는 250,000,000원이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등기사항증명서)
- 1. (계약서)
- 1. 갑 제3호증의 (각 통고서)

- 1.
- 2.
- 3.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4통
- 1. 소장부분 3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토지대장등본(소가산정자료) 1통
- 1. 건축물대장등본(소가산정자료) 1통

- 1. 위 증명방법 각4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 5. 송달료납부서 1통
- 6.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7. 소장부분 3통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삭제

2013. 9. 28.

위 원 고 김대인 (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

140 페이지

입 증 방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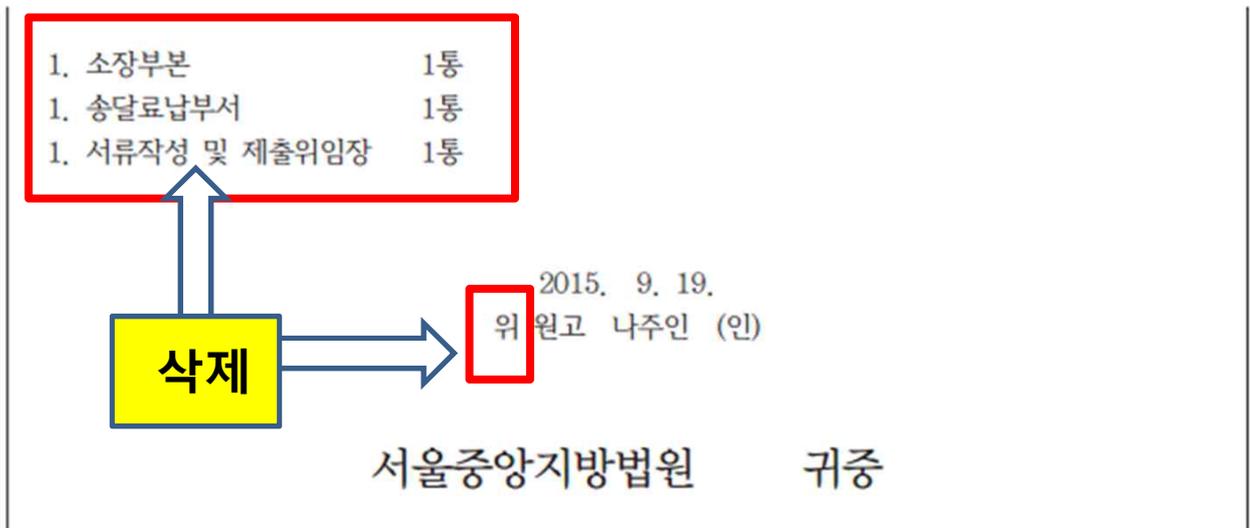
증명방법

- | | |
|--------------|-----------|
| 1. 갑 제1호증 상가 | 1. 임대차계약서 |
| 1. 갑 제2호증 내용 | 2. 이사항증명서 |
| 2. 갑 제3호증 내용 | 3.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 | | |
|---------------|-----|
| 1. 위 증명방법 | 각2통 |
| 2. 영수필확인서 | 1통 |
| 3. 토지대장등본 | 1통 |
| 4.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1통 |
| 5. 송달료납부서 | 1통 |
| 6.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 1통 |
| 7. 소장부분 | 1통 |



5.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2008년 변호사실무 문제 일부 발췌변형

〈 유의사항 〉

1. 박상수와 박선수의 위 진술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2019. 9. 21.자로 이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법하며 승소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시오.
2. 여러 명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40,000,000원..으로 수정**로 작성하시오.
3.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되, 청구원인은 ~~오~~건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시오.
4.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첩부인지액을 계산 내역과 함께 기재하시오.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146-2 잡종지 660㎡의 공사지가는 **80,000,000원**이고, 시가는 1억 원이다.

*** 위 지상에 김수호가 축조한 건물의 지방세과세표준액은 **40,000,000원**이고, 시가는 60,000,000 원이다.

30,000,000원..으로 수정

4. 마치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 | |
|--------------------------|----|
| 1. 갑 제1호증 (등기부본 : 토지) | 1. |
| 1. 을 제1호증 (등기부본 : 매매계약서) | 2. |
| 1. 갑 제3호증 (등기부본 - 건물) | 3.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서류 | 2통 |
| 1. 소장부분 |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 1. 토지대장등본 | 1통 |
| 1. 건축물대장등본 | 1통 |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 1통 |

- | | |
|---------------|-----|
| 1. 위 증명방법 | 각2통 |
| 2. 영수필확인서 | 1통 |
| 3. 토지대장등본 | 1통 |
| 4.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1통 |
| 5. 송달료납부서 | 1통 |
| 6.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 1통 |
| 7. 소장부분 | 1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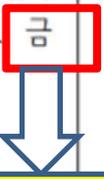
토지인도청구의 소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로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 및 이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20.부터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에서 2003. 3. 20.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6 대 120㎡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3,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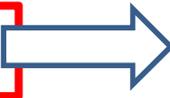
청구 원인

1. 매매계약

원고는 2003. 1.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6 대 120㎡(이하 "이 사건 부동산")

152 페이지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 1. 갑 제2호증
- 1. 갑 제3호증
- 1. 갑 제4호증



-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2. 매매계약서
- 3. 영수증(계약금 및 중도금)
- 4. 채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2통
- 1. 소장부분 1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토지대장등본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2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1통

위 원

2003. 9. 21. (인)

삭제

1. 사례

【공통사례】

- (1) 甲은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건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3. 8. 20. 乙로부터 乙 소유의 서울 광진구 군자동 53-9 소재 토지(건물)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300만원, 임대차기간을 2003. 8. 30. 부터 2006. 8. 19. 까지 임차하였다. 위 계약 당시 甲과 乙은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인은 지상 건물(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 (2) 甲은 위 토지 위에 단층 건물(건평 100평)을 신축하여 2003. 12. 20.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한강가구”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점을 개업하여 영업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乙은 자금사정으로 2005. 10. 10.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2005. 10. 20.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 (3) 丙은 위 임대기간이 만료된 날인 2006. 8. 19. 甲에게 즉시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甲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계속 영업을 강행하자

20...로
수정

157 페이지 아래부분

를 구하는 丙의 예비적 청구는 일년 이유있다.

⑥ 한편, '丙의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甲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甲의 항변은 이유있다.

⑦ 결론 : 甲에 대하여, 丙으로부터 이 사건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3억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그 인도를 명하는 동시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⑧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① 건물에 관한 부분 : 甲이 건물소유자이므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토지에 관한 부분 : 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당연히 그 부지인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셈이 되어 차임 상당액인 월 300만원씩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甲은 이를 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甲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07. 2. 20. 이후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부지인 위 토지에 관하여 그 차임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점에 관한 甲의 주장은 이유없다.

③ 결론 : 甲에 대하여, 2006. 8. 29.부터 甲의 丙의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20...로
수정

181 페이지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 1. 갑 제2호증

-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2. 매매계약서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2통
- 1. 소장부분 1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토지대장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 2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1통

위 2000 원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위 내용과 중복이므로 아래
내용 모두 삭제 후 그 다음 목
차 번호 정정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
라..

나) 유형 - 매매대금 청구(이전등기와 동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100,000,000 원
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유형 - 전세금반환 청구(전세권말소등기와 동시이행)

- 1. 피고(전세권설정자) 원 2013. 3. 27. 접수의 인도를 받음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아래 내용 모두 삭제 후 그 다음 목차 번호 정정

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부 판결의 이행 및 위 부동산

라) 유형 : 매매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있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송파등기소 2014. 10. 15. 접수 제1234호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액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매수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의 범위는 등기상의 담보한도액에 상당한 금액에 한하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이 한도액보다 적은 것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 마찬가지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아가, 매수인이 가압류에 기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집행채권 등을 변제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구상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마) 장래이행 청구 1) - 다툼이 있는 근저당 피담보채권액 산액변제 후 말소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210 페이지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 1. 갑 제2호증
- 1. 갑 제3호증
- 1. 갑 제4호증

- 1. 매매계약서
- 2. 기사항전부증명서
- 3. 용증
- 4. 전공탁서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 1. 공지가확인원(또는 토지대장 등 소가산정자료)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 1. 위 증명방법 각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2통

위 원

2018. 9. 15.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4. 이상과 같은 이유도 현고는 상구위시와 같은 현결할 것이 귀하여 온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부동산
- 1. 갑 제2호증
- 1. 갑 제3호증 채권양

- 1. 항증명서(토지)
- 2.
- 3.

첨 부 서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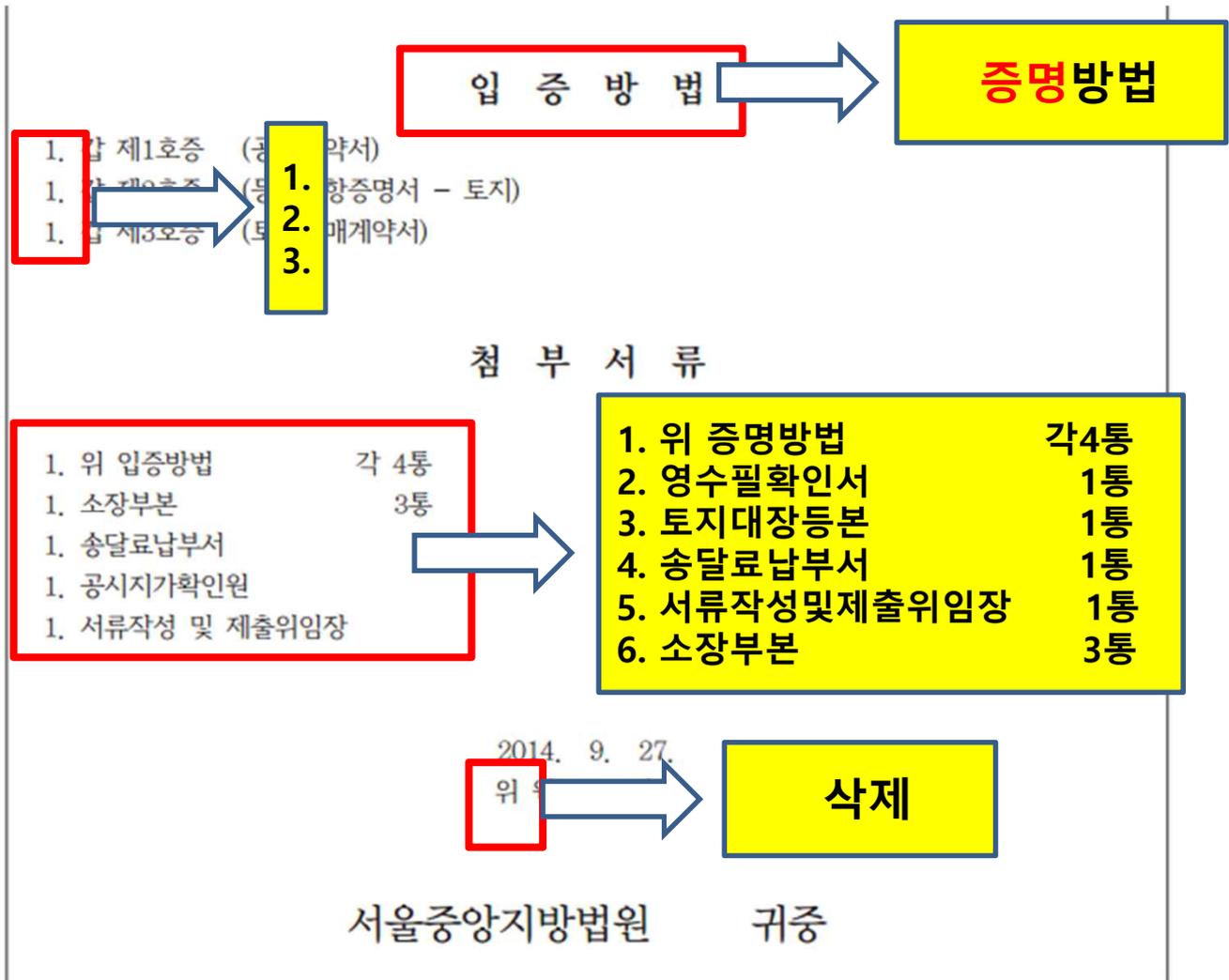
- 1. 위 입증방법 각 2통
- 1. 소장부분 1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 각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 2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1통

2008. 1. 4.
위 원 고 이주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삭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25㎡에 관하여,
가. 피고 정위자는 3/5 지분에 대하여,
나. 피고 유남인은 2/5 지분에 대하여,
각 2005. 9. 1.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아래내용으로 수정

1. 원고에게, 피고 정위자는 별지목록 제2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25㎡의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유남인은 2/5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9. 1.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의 1
- 1. 갑 제2호증의 1
- 1. 갑 제3호증의 1
- 1. 갑 제4호증

- 1.
- 2.
- 3.
-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별지목록 제2기재 토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 및 건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진(담장 등 현황)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 1. 개별공시지가확인원(또는 토지대장등본)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2통

2005. 10. 9.
 위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각 제1호증
- 1. [unclear]

- 1.
-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4통
- 1. 증거설명서 4통
- 1. 소장부분 3통

- 1. 증거설명서 및 위 증명방법 각4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3통

235 페이지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토지대장등본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삭제

2002. 9. 29.
위임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 1. 갑 제3호증
- 1. 갑 제4호증의

- 1.
- 2.
- 3.
- 4.

대물변제확인서
 약속어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토지대장등본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2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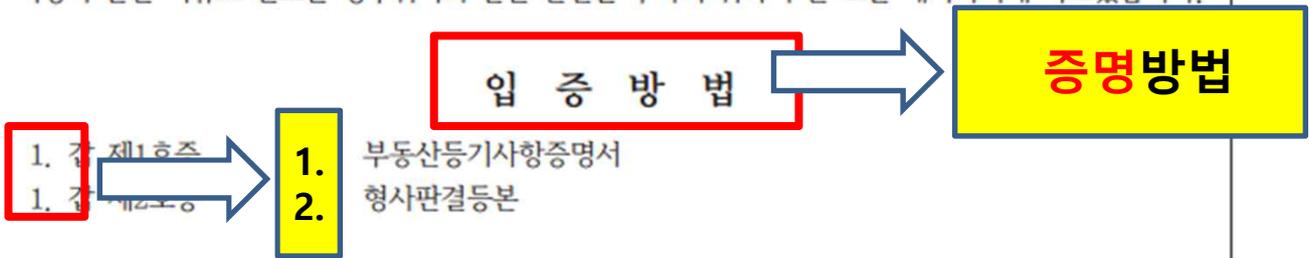
1992. 8. 25.
 위 원 고 1. 이만식
 2. 이만식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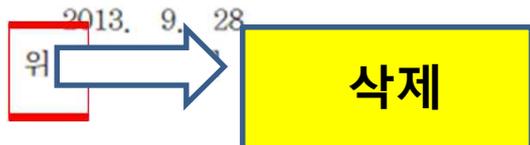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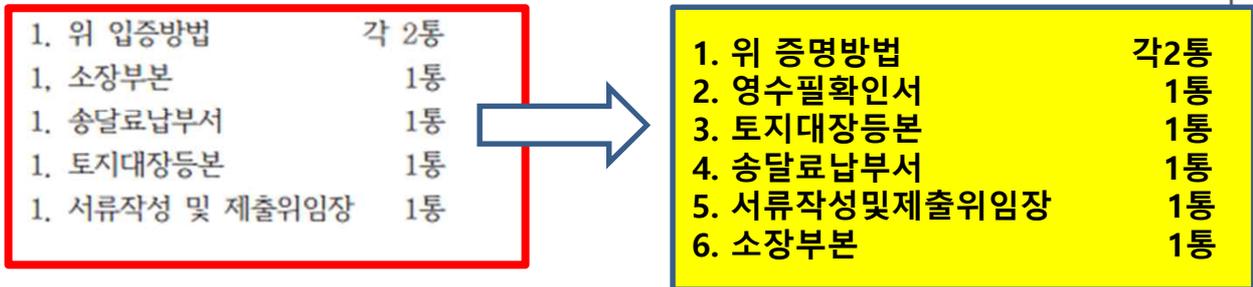
원고 이만식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갑순 (인)

3. 결 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53 페이지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등) 1. 증명서 : 횡계리 146-1)
- 1. 갑 제2호증 (등) 2. 증명서)
- 1. 갑 제3호증 (등) 3. 증명서 : 횡계리 153)
- 1. 갑 제4호증 (등) 4. 계획확인원)
- 1. 갑 제5호증 (부) 5. 대차계약서)
- 1. 갑 제6호증 (등) 6. 증명서 - 건물)
- 1. 갑 제7호증의 7. 증명우편)
- 1. 갑 제7호증의 8. 물배달증명)
- 1. 검증 및 감정(현) 9.)
- 1. 문서송부촉탁신 10.)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1. 증거설명서 및 위 입증방법 각 4통
- 1. 소장부분 3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토지대장등본 1통
-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증거설명서 및 위증명방법 각4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건축물대장 1통
- 5. 송달료납부서 1통
- 6.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7. 소장부분 3통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 | | |
|------------|----|---------------------|
| 1. 참 제1호증의 | 1. | 2 (제적등본 등) |
| 1. 참 제2호증의 | 2. | 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 1. 참 제3호증의 | 3. | 2 (진료확인서 등) |
| 1. 참 제4호증의 | 4. | 3 (각 출입국에관한증명서 등) |
| | 5. | 2 (계약해제통지서 등) |
| 1. 참 제6호증의 | 6. | 지 7 (고소장 등) |
| 1. 참 제7호증 | 7. | 서 정보) |
| 1. 참 제8호증의 | 8. | 4 (차용증, 피고 노애정명의 등) |
| 1. 참 제9호증 | 9. | 가서) |

첨 부 기 록

| |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3통 | → | 1. 위 증명방법 | 각 3통 |
| 1. 소장부분 | 2통 | | 2. 영수필확인서 |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 3. 토지대장등본 | 1통 |
| 1.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 1통 | | 4. 송달료납부서 | 1통 |
| | |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 1통 |
| | | | 6. 소장부분 | 2통 |

2007. 8. 24.

위 원 고 김 일 기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 | | |
|---------------|----|------------|
| 1. 갑 제1호증의1,2 | 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 1. 갑 제2호증 | 2. | 무통장입금증 |
| 1. 갑 제3호증 | 3. | 매매계약서 |
| 1. 갑 제4호증 | 4.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3통 |
| 1. 소장부분 | 2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각 1통 |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 1통 |

- | | |
|------------------|-----|
| 1. 증거설명서 및 위증명방법 | 각3통 |
| 2. 영수필확인서 | 1통 |
| 3. 토지대장등본 | 1통 |
| 4. 건축물대장 | 1통 |
| 5. 송달료납부서 | 1통 |
| 6.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 1통 |
| 7. 소장부분 | 2통 |

2012. 9. 22.
위 원 회 기 록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90 페이지

입 증 서 류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부속기부사항증명서
- 1. 을 제1호증 사본 등 록증
- 1. 갑 제3호증 무인입금증

- 1.
- 2.
- 3.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토지대장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2통

2008. 9. 28
위 갑동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간판부 (등기 증명서 - 토지)
- 1. 집 제2차증 (영

1.
2.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2통
- 1. 소장부분 1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토지대장등본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2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1통

2007. 10. 10.
위 본포 주영

삭제

③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8. 5. 접수 제4237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동법 제4조 2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이득하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매수자금 5억원(계약금 2억원 + 중도금 3억원)은 물론, 동인이 원고로부터 위 매수자금을 수령할 때 이미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금 2억원에 대하여는 2003. 5. 9.부터, 중도금 3억원에 대하여는 2003. 6.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 2

연 12%

1. 명의신탁

① 원고는 장경근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1994. 6. 15. 제주지방법원 93타경6510호 부동산임의 경매에서, 원고가 경락대금 18억원 등 경락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별지목록 제1기

294페이지와 295 페이지 사이에 아래 법무사 기출문제 추가

14. 사례 - 26회(2020년) 법무사 기출문제

김갑동[주민등록번호 : 750401-1111111,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1, 101동 1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전화번호 : 010-1234-1111, 전자우편 : kkd@kmail.com]은 2020. 9. 10.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져온 별첨 서류를 제시하면서 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적합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30점)

< 다 음 >

- 저는 전자부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 불황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동생이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친한 동생인 이을남[주민등록번호 : 790326-2222222,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2, 202동 202호(방배동, 방배아파트), 전화번호 : 010-1234-2222, 전자우편 : len@kmail.com]에게 2019. 1. 1.에 원금 5천만 원, 이자 월 1%(매달 말일 지급), 변제기를 2019. 6. 30.로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1차 채무). 이후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사업 운영이 점차 어려워져서 2019. 1. 1.에 빌린 돈의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사업 운영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명목이 없었지만, 이을남으로부터 2019. 2. 1.에 원금 3천만 원, 이자 월 1%(매달 말일 지급), 변제기를 2019. 7. 31.로 하여 돈을 더 빌렸습니다(2차 채무). 이 때 이을남은 전에 빌려준 돈의 이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이 불안하다며 담보를 요구하여, 차용증을 작성함과 동시에 이을남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같은 날인 2019. 2. 1. 이을남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 2019. 2. 1.에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이을남,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 김갑동, 채권최고액 : 1억 원이며,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겸 채무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증서상의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1차 채무의 변제기인 2019. 6. 30.이 지나고 2차 채무의 변제기인 2019. 7. 31.이 지났지만, 저는 1차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와 2차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 중 어느 것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을남은 저에게 몇 차례 채무독촉을 한 이후 2019. 9. 1.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깜짝 놀란 저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인의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1차 채무의 원금 5천만 원, 이자 3백만 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이자를 모두 변제하고 경매 취하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이을남은 저의 부탁을 받고 2019. 10. 1.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 이후 저와 이을남은 다시 사이가 좋아졌지만, 저의 사업운영은 더욱 어려워져 이을남으로부터 2019. 11. 1.에 원금 1천만 원, 이자 월 1%(매달 말일 지급), 변제기 2019. 12. 31.로 돈을 더 빌렸습니다(3차 채무).
-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좋은 가격에 매수의사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 저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척이 매매 협상 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는 것을 매매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저는 2020. 1. 10.에 채무를 변제하려고 이을남을 찾아갔으나 이을남은 2차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와 3차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를 모두 돌려받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을남이 저에게 2020. 1. 20.에 보낸 내용증명서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부동산을 하루라도 빨리 매매하여 어려운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어, 이을남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2차 채무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인도 법률적 지식이 정확한 것은 아니니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이을남의 근저당권이 2020. 2. 1.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2020. 2. 10.자에 박병호[주민등록번호 : 780626-1333333,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03, 301동 301호(반포동, 반포아파트), 전화번호 : 010-1234-3333, 전자우편 : pph@kmail.com]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박병호와 어렵게 전화통화가 되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니 박병호도 이을남과 동일하게 2차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와 3차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를 모두 돌려받지 못하면 근저당권 말소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잘 몰라서 혼자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매하고 싶어 정당한 채무 금액이라면 이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 받고 싶습니다.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김갑동의 위 진술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의사를 존중하여 2020. 9. 19자로 김 갑동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법하며 승소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할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작성일자가 공휴일인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여러 명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합 요건을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소 장으로 작성하십시오.
-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되,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위주로 기 재하고 별첨 서류들을 참조하여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도 소장에 함께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납부할 인지액을 그 각 계산내역과 함께 기재하십시오(별 지 기재 부동산인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 800,000원인 것으로 가정함).
- 위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번, 전화번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 서 등은 모두 가공의 것이고, 별첨 서류들은 모두 시험용으로 만든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별지 기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80 대 100㎡ 끝.

[별첨 서류 1] 차용증

1차 채무 차용증

이.윤 남(790326-2222222) 귀하

금액 : 금 5천만 원(50,000,000원), 이자 : 월 1%(매달 말일 지금), 만기 : 2019.5.30.

위 금원을 정회 차용함

2019. 1. 1.

차용인 : 김갑동(750401-1111111)

2차 채무 차용증

이.윤 남(790326-2222222) 귀하

금액 : 금 3천만 원(30,000,000원), 이자 : 월 1%(매달 말일 지금), 만기 : 2019.7.31.

위 금원을 정회 차용함

2019. 2. 1.

차용인 : 김갑동(750401-1111111)

3차 채무 차용증

이.윤 남(790326-2222222) 귀하

금액 : 금 1천만 원(10,000,000원), 이자 : 월 1%(매달 말일 지금), 만기 : 2019.12.31.

위 금원을 정회 차용함

2019. 11. 1.

차용인 : 김갑동(750401-1111111)

[별첨 서류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 이을남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 김갑동

채권최고액 : 금 1억 원(100,000,000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증서상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아래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80 대 100 m².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한다.

2019. 2. 1.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 이을남[주민등록번호 : 790326-2222222,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

로 202, 202동 202호(방배동, 방배아파트)]

이을남
인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 김갑동[주민등록번호 : 750401-1111111,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01, 101동 1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김갑동
인

[별첨서류 3] 내용증명서

김갑동 귀하

1. 귀하와 저는 서로 신뢰관계를 맺고 2019. 1. 1.에 1차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2019. 2. 1.에 2차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돈을 빌려줄 당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80대 100㎡에 채권최고액 금 1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귀하가 1차 및 2차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러자 귀하는 1차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만 변제하였습니다. 저는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이후 귀하에게 3차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금 1억 원)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증서상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였으니, 귀하는 2차 채무뿐만 아니라 3차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저는 귀하가 부담하고 있는 2차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와 3차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를 채권최고액(금 1억 원) 범위 내에서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2020. 1. 20.

이름남

[별첨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토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80 대 100㎡

고유번호 1102-3654-914567

| 【표제부】 | | (토지의 표시) | | | |
|-----------|-----------------|--------------------|----|------|--|
| 표시 번호 | 접수 | 소재지번호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전2) | 1997년 8월 28일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80 | 대 | 100㎡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21일 전산 이기 |

| 【갑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
| 순위 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전3) | 소유권 이전 | 1997년 7월 1일 제8589호 | 1997년 8월 1일 대매 | 소유자 김갑동 760401-1111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 로 101, 101동 101호(서초 동, 서초아파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21일 전산이기 |
| 2 | 임의경매채권 결공 | 2019년 10월 1일 제4988호 | 2019년 9월 1일 서울중앙지법과 임의경매채권결공 (2018 바 경 121212) | 채권과 이용남 700828-22222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 로 202, 202동 202호(방배 동, 방배아파트) |
| 3 | 2번일의경매 경시결정등기 판소 | 2019년 10월 1일 제5078호 | 2019년 10월 1일 취하 | |

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912011910120004101012007200720072101110412811112 발급확인번호 ATIL-IXIA-0047 발행일 0000/00/00

| 【유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 |
|--------------------------|--------------|--------------------------|--------------------------------|---|
| 순위번호 | 등기부표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 근저당권 설정 | 2019년 2월 1일 제 1855 호 | 2019년 2월 1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무자 김갑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 로 101, 101동 1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근저당권자 이용남 700828-22222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 로 202, 202동 202호(반포동, 반포아파트) |
| 1-1 | 1번근저 당권의존 | 2020년 2월 10일 제 1015 호 | 2020년 2월 1일 채권압류 및 존 분명령 | 근저당권자 박병호 780828-1888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 로 303, 301동 301호(반포동, 반포아파트) |

수수료 금 1,2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월 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권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원리 또는 목적으로 출력 가능함.

* 기록사항 없는 경우, 유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912011910120004101012007200720072101110412811112 발급확인번호 ATIL-IXIA-0047 발행일 0000/00/00

답안례

소 장

*** 소가 40,000,000원
산출내역 800,000원 x 100㎡ x 50/100
*** 인지액 185,000원
계산내역) 40,000,000원 x 45/10,000 + 5,000

원 고 김갑동 (750401-11111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1, 101동 1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전화번호 : 010-1234-1111, 전자우편 : kkd@kmail.com

피 고 박병호 (780626-133333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03, 301동 301호(반포동, 반포아파트)
전화번호 : 010-1234-3333, 전자우편 pph@kmail.com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 부터 다 갚는날 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80 대 100㎡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2019. 2. 1. 접수 제13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근저당권 설정등기

원고는 2019. 2. 1. 소외 이을남과 사이에 "이을남에게 부담하게 될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증서상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이을남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담보채권

1) 원고는 2019. 1. 1. 이을남에게 원금 5천만 원, 이자 월 1%, 변제기를 2019. 6. 30.로 하여 돈을 빌렸고(1차 채무), 2019. 2. 1.에 원금 3천만 원, 이자 월 1%, 변제기를 2019. 7. 31.로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2차 채무).

2) 이와 관련하여 이을남은 2019. 9. 1.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을남에게 1차 채무의 원금 5천만 원, 이자 3백만 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이자를 모두 변제하였고 위 이을남은 위 경매사건을 취하하여 주었습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이을남의 경매신청시인 2019. 2. 1 확정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2차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근저당권이진 및 미리 청구할 필요

1) 그러나 위 이을남은 2차 채무자는 물론 그 후 2019. 11. 1.에 빌린 원금 1천 만원, 이자 월 1%, 변제기 2019. 12. 31.의 채무(3차 채무)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 시켜 줄 수 없다고 주장하던 중, 위 이을남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20. 2. 1.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2020. 2. 10.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었는데, 피고 역시 이을남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와 같이 이을남의 경매신청시인 2019. 2. 1 확정되어 위 3차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을남이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그리하여 원고로서는 정당한 채무금액이라면 이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 받고 싶은데, 잔존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장래 이행의 소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마치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차용증
2. 갑 제2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갑 제3호증 내용증명
4.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2. 소장부분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4. 토지대장 1통
5.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2020. 9. 19.

위 원고 김갑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312 페이지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 1. 갑

- 1.
- 2.

차용증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4통
- 1. 소장부분 3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토지대장등본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4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3통

2000
위 원

삭제

청 구 취 지

1. 피고 이을남 동 박병호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0.부터 다 갚는 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박병호와 피고 최정술 사이의 제주시 이도1동 123 대 100㎡에 관한 1999. 10. 8.자 매매 계약의 취소한다.

피고 이을남, 박병호는

- 제1항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0. 5. 1. 판결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1998. 2. 29. 피고 이을남에게 20,000,000원(이른바 "대여금")을 대출한 바, 변제기 1999. 9. 29.로 하여 빌려주었고, 피고 박병호는 같은 날 피고 이을남에게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 보증을 한 바 있으나, 피고 이을남은 약정된 기한 내에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 이을남은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함을 이유로,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199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서)

삭제

2. 사해행위 취소청구

가. 피고 박병호는 그의 제주시 이도1동 123 대 75.5㎡(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피고 최정술에게 1999.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주지방법원 2000. 5. 1. 접수 제3456호로 경료하여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부등본).

나. 그러나 피고 박병호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외에 친구에게도 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돈도 받지 않고 피고 최정술에게 매매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 최정술은 피고 박병호의 5촌 당숙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321 아래부분

3. 결 언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1. 갑 제1호증
1. 을 제1호증

1.
2.

차용증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4통

- | | |
|---------------|-----|
| 1. 위 증명방법 | 각4통 |
| 2. 영수필확인서 | 1통 |
| 3. 토지대장등본 | 1통 |
| 4. 송달료납부서 | 1통 |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 1통 |
| 6. 소장부분 | 3통 |

▶▶▶ PART 05 사해행위 취소

- | | |
|-----------------|----|
| 1. 소장부분 | 3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 1. 토지대장동본 | 1통 |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 1통 |

삭제

2000. 7. 1.
위 원고 김갑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 사례 - 제3회(1996년) 기출문제

다음의 설문으로 민사소장을 작성하시오. 김갑순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김갑순

2. 이을희
서울 서초구 서초동 590
3. 강병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1-53 삼성빌라 101호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이을녀와 동 이을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이을녀와 동 강병섭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30. 체결한 전세권 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이을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6. 3. 30. 합의 제10000호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의 이

4,000만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5. 3. 25.로 하여 대여한 바 있으며, 여기에 피고 이을녀의 동생인 동 이을희가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이을녀와 동 이을희는 연대하여(상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보증인인 피고 이을희는 주채무자인 피고 이을녀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199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손해행위 취소청구

가. 피고 이을녀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강병섭과 사이에 1996. 3. 30. 전세면적8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996. 3. 30. 접수 제0000호로 강병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는 피고 이을녀가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시가 8,000만원 상당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 강병섭과 사이에 허위로 협의이혼을 한 후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손해행위이며 피고 강병섭은 피고 이을녀의 남편으로서

비율로 계산한

328 페이지 위 부분

▶▶▶ PART 05 사해행위 취소

▶ 답안례

소 장

*** 소 가 100,000,000원
*** 인지대 455,000원
내역) 100,000,000원 x 40/10,000 + 55,000원

원 고 김갑남 (580808-1234890)
서울 서초구 서래로 5길 33(반포동)
전화번호 : 555-5678
전자우편 : kabnamkim@nanana.com

피 고 1. 이정동 (600909-1567567)
서울 강남구 삼성로 81번길

아래 내용으로 수정

*** 소가 120,000,000원
*** 인지대 535,000원
내역) 120,000,000원 x 40/10000 + 55,000원

청 구 원 인

1. 피고 이정동에 대한 청구

원고는 "대한전기"라는 상호로 전기부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서 "한강산업"이라는 상호로 전기부품 소매업을 하는 상인인 피고 이정동에게 전기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 이정동은 2005. 12. 31. 현재 그 미수 외상대금을 금 1억원으로 정산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이정동은 2006. 2. 1.까지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월 1%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이정동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손해행위 청구

아래 내용으로 수정교체

원고는 피고 이정동에게 전기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오던 중 2005. 12. 31. 그 미수 외상대금을 금 1억원으로 정산을 하였고, 피고 이정동은 2006. 2. 1.까지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월 1%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이정동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29 페이지 아래부분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 1)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① 2004. 2. 2. 채권자 주식회사 신촌은행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만원), ② 2005. 6. 10. 채권자 민국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피담보채무액 121,000,000원(4,100만원 + 8,000만원)은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89,000,000원(= 3억원 - 4,100만원 - 8,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 사해행위 **이정동** 것이나, 피고가 2006. 2. 28. 이미 민국은행에게 위 근저당피담보채무 **이정동**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2) 따라서 피고 벽병서가 피고 **이을서**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 체결된 매매계약은 120,000,000원(원금 1억원 + 이에 대하여 2006. 2. 2.부터 2017. 10. 1.까지 20개월 지연손해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 **이러** 이르렀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수정교체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30 페이지

렸습니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가 제 1 증
- 1. 입 증

- 1.
- 2.

정산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송달료납부서 1통
- 4.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5. 소장부분 2통

2007. 10. 10.
위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청 구 원 인

1. 피고 강경학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5. 3. 18. 피고 강경학에게 금 2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5. 6. 17.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그 후 피고 강경학은 2005. 6. 17. 위 대여금 중 50,000,000원과 위 대여금에 대한 그때까지의 약정이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과 그 이후의 이자를 현재까지도 한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강경학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0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청구

1) 피고 강경학은 2005. 8. 31. 원고의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고 같은 2005. 8. 17. 접수 제12357호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수정교체

원고는 2005. 3. 18. 피고 강경학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5. 6. 17.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그 후 피고 강경학은 2005. 6. 17. 위 대여금 중 50,000,000원과 위 대여금에 대한 그때까지의 약정이자만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강경학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0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 1)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사해행위 당시에 근저당채무금 1억원과 주택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그 금액 2억 5천만원(= 1억원 + 1억 5천만원)은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 **↓**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50,000,000원(= 3억원 - 1억원 - 1억 5천만)의 **↓** 내에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이나, 피고가 그 후 위 근저당피담

설정되어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피고 강경학과 피고 이수용 사이에 변지모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은 50,000,000원의 한도 내 위 내용으로 수정교체 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음 달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마치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1. 차용증
- 1. 갑 제2호증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1. 갑 제3호증 3. 가족관계증명서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토지대장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 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2통

2007. 10. 7
위 원 고

삭제

전자우편 : kkchyun@hana.com)

- 피 고 1. 이을하 (620325-1711360)
서울 강남구 개포동 330-1 대모빌라 201호
2. 박병남 (631020-1215661)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2 서래아파트 101동 205호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이을하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월 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이을하와 피고 박병남 사이에 호 갈탄면 가재리 20-8 대 350㎡에 관하여 2013. 7.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병남은 피고 이을하의 위변조 주장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7. 15. 접수 제188호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상소심판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이끌어내지 않음에 따라 위 변조 주장을 인정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아래 내용으로 수정교체

1. 피고 이을하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1. 피고 이을하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340 페이지 위 부분

100,000,000원(이하 “의류대금”이라 합니다)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위 의류 2,000벌을 2012. 5. 15.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은 2012. 5. 31.까지 지급받으며 위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2. 5. 15. 여성용 반바지 2,000벌을 피고 이을하에게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 후 위 대금의 지급기일을 **2013.** 7. 31.로 연기하였습니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6. 1. 피고 이을하에게 150,000,000만원(이하 “차용금”이라 합니다)을 변제기 2012. 12. 31. 월 이을하에게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다. 그런데 피고 이을하는 **2012.** 1. 31. 원고에게 90,000,000원을 변제(이하 “변제금”이라 합니다)하였는 바, 이 변제금은 위 의류대금채무와 차용금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이을하와 사이에는 지정충당이나 합의충당이 없었으므로, 위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 데, 의류대금채무와 차용금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사실은 명백하고 의류대금의 지연이자율이 월 1%인 반면 차용금채무의 이율이 월 2%이므로 차용금채무가 변제자인 피고 이을하에게 변제인이 더 많은 채무에 해당하므로 미변 제177조 제2항에

340페이지 아래부분

여는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차용금 원본잔액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삭제

2. 피고 박병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가. 피고 이을하는 2013. 7. 10.경 피고 박병남에게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7. 15. 접수 제18813호로 피고 박병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나. 그러나 이는 피고 이을하가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처남인 피고 박병남과 통정하여 허위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이고, 피고 박병남은 위 이을남의 처남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1. 갑 제2호증

- 1. 공급계약서
-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 1. 토지대장등본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송달료납부서 1통
- 5.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6. 소장부분 2통

2013. 9. 2
위 원

삭제

2. 사해행위 청구

- 1) 피고 권성우는 2015. 5. 31. 피고 이수미와 2015. 8.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7.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2015. 9. 1. 피고 이수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4. 위 매매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
- 2) 이는 피고 권성우가 원고 외에도 다른 원고들과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장모인 피고 이수미와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 이수미는 피고 권성우의 장모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약의 수익자입니다.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설정
계약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 1)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사해행위 당시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 4억 5천만원은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50,000,000원(= 5억원- 4억 5천만)의 범위 내에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입니다. 당시 피고 이수미 역시 2016. 8. 3.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9. 14. 피고 권성우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수한 후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였지만, 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 및 반환범위도 달라 지므로 피고 이수미의 이 근저당설정계약의 취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습니다.

348페이지 위 부분

▶▶▶▶ 그런데

취소

- 
- 2) 그리고 피고 이수미가 2015. 9. 14. 피고 권성우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수한 후 2015. 10. 16. 별지 기재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부동산가압류가 경료되어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3) 그러므로 피고 권성우와 피고 이수미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 및 2015. 9. 1. 체결된 매매계약은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이수미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 1. 갑 제2호증
 - 1. 갑 제3호증
1. 갑 제1호증
2. 갑 제2호증
3. 갑 제3호증
- 1. 갑 제1호증
 - 1. 갑 제2호증
 - 1. 갑 제3호증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4통
- 1. 소장부분 3통
- 1. 송달료납부서
- 1. 토지대장등본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 4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송달료납부서 1통
- 4.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5. 소장부분 3통

2016. 9. 9

위 입증 방법

삭제

368 페이지 위 부분

피고

김상희, 노장곤의 각 임대차보증금도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



고 이원기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정하여진 보증금액이 김상희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3억원에 위 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 정한 환산비율 100/1에 따라 산정한 월 차임 650만원에 대한 환산보증금 6억 5천만원(= 650만원 × 100/1)을 합하면 9억 5천만원(3억원 + 6억 5천만원)에 이르고, 노장곤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3억원에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 월 차임 620만원에 대한 환산보증금 6억 2천만원을 합하면 9억 2천만원(3억원 + 6억 2천만원)에 이르게 되는 바, 위 법 제2조 제1항,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상희, 노장곤의 위 각 보증금액은 그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역의 위 적용범위 한도액인 9억원을 각 초과함으로써 위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김상희, 노장곤의 각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 이원기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74 페이지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부속 등기사항증명서
- 1. 갑 제2호증 양도양수계약서
- 1. 갑 제3호증의 1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 1.
- 2.
- 3.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증거설명서 및 위증명방법 각 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건축물대장 1통
- 5. 송달료납부서 1통
- 6.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7. 소장부분 2통

2012. 9. 17
위임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부속기사항증명서
- 1. 갑 제2호증 임대계약서
- 1. 갑 제3호증의 1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 1.
- 2.
- 3.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증거설명서 및 위증명방법 각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건축물대장 1통
- 5. 송달료납부서 1통
- 6.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7. 소장부분 2통

2012. 9. 17
위

삭제

387 페이지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등산등기사항증명서
- 1.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
- 1. 갑 제3호증 3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 1.
- 2.
- 3.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증거설명서 및 위증명방법 각 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토지대장등본 1통
- 4. 건축물대장 1통
- 5. 송달료납부서 1통
- 6.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7. 소장부분 2통

2012. 9. 17
위 원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청 구 원 인

1. 피고 이하응과 이하민에 대한 청구

1) 2014. 8. 1. 원고는 망 이을남과 사이에 그간의 자전거 부품외상 미수금을 70,000,000원으로 위 정산금을 지급하되, 연체할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약정이율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월 1%의 약정이율로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피고 이하응과 이하민이 있으나 원고의 2017. 2. 6.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100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신고하여 2017. 3. 2. 승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이하응과 이하민은 망 이을남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 박병정과 김춘자에 대한 청구

- 1) 피고 박병정은 2015. 6. 15. 소외 정양무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 339, 4동 507호 80㎡(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합니다)를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100만원, 임차기가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0.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입니다.
- 2) 원고는 2015. 10. 1. 피고 박병정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자 월 2%로 대여하 호 의 대여금 채권부자는 의해 피고 박병정이 소위 정양무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3. 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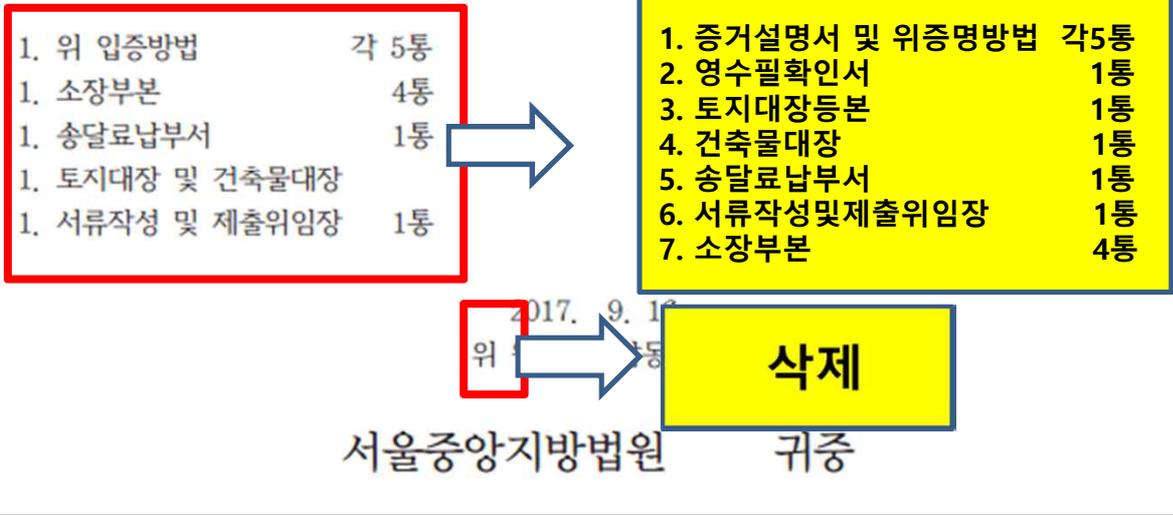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 1. 산서
- 1. 갑 제2호 1. 내지3 가족관계증명서 등
- 1. 갑 제3호 2. 정승인심판서
- 1. 갑 제4호 3. 용증
- 1. 갑 제5호 4. 동산임대차계약서
- 1. 갑 제6호 5. 2 채권가압류결정문 등
- 1. 갑 제7호 6. 내지3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 1. 갑 제8호 7. 동산등기사항증명서
- 1. 갑 제8호 8.

첨 부 서 류



청 구 원 인

1. 피고 이하유에 대한 청구

가. 대여금 청구

- 1) 원고는 피고 이하유에게 2008. 7. 1. 2억원을 이자율은 연 18%,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 이하유는 2008. 12. 31.까지의 이자만을 갚았을 뿐 나머지는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 2) 원고가 피고 이하유에게 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피고 이하유는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안해진이 위 대여금 중 위금 4천만원에 대하여 채권이아르거져요 바라고 그 결정이 피고 이하유에게 2009. 8. 10.에 확정되었고, 나머지도 현재 돈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재판가압류집행이 있다하여도 이는 가압류채

이 부분에 아래내용 추가

그러므로 피고 이하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 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채무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소외 박추병은 2008. 3. 1. 동대문 평화상가에서 의류도매상을 운영하는 피고 이하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 2008. 4. 30.로 정하여 빌려 준 적이 있고, 원고는 2008. 5. 15. 위 박추병에게 5천만원을 이자율은 월 1%로, 변제기는 2008. 11. 30.로 정하여 빌려 주었는데 위 박추병은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09. 9. 9. 원고에 대한 위 돈 5천만원(2008. 5. 15.자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조로 자신이 피고 이하유로부터 받을 위 돈 5천만원(2008. 3. 1.자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피고 이하유에게 자신이 이하유로부터 받아야 할 위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피고 이하유는 그 우편을 2009. 9. 11.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이하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 1. 갑 제2호증
 - 1. 갑 제3호증
 - 1. 갑 제4호증
1. 증명
2. 증명
3. 증명우편
4. 등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 1. 증거설명서 및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소장부분 2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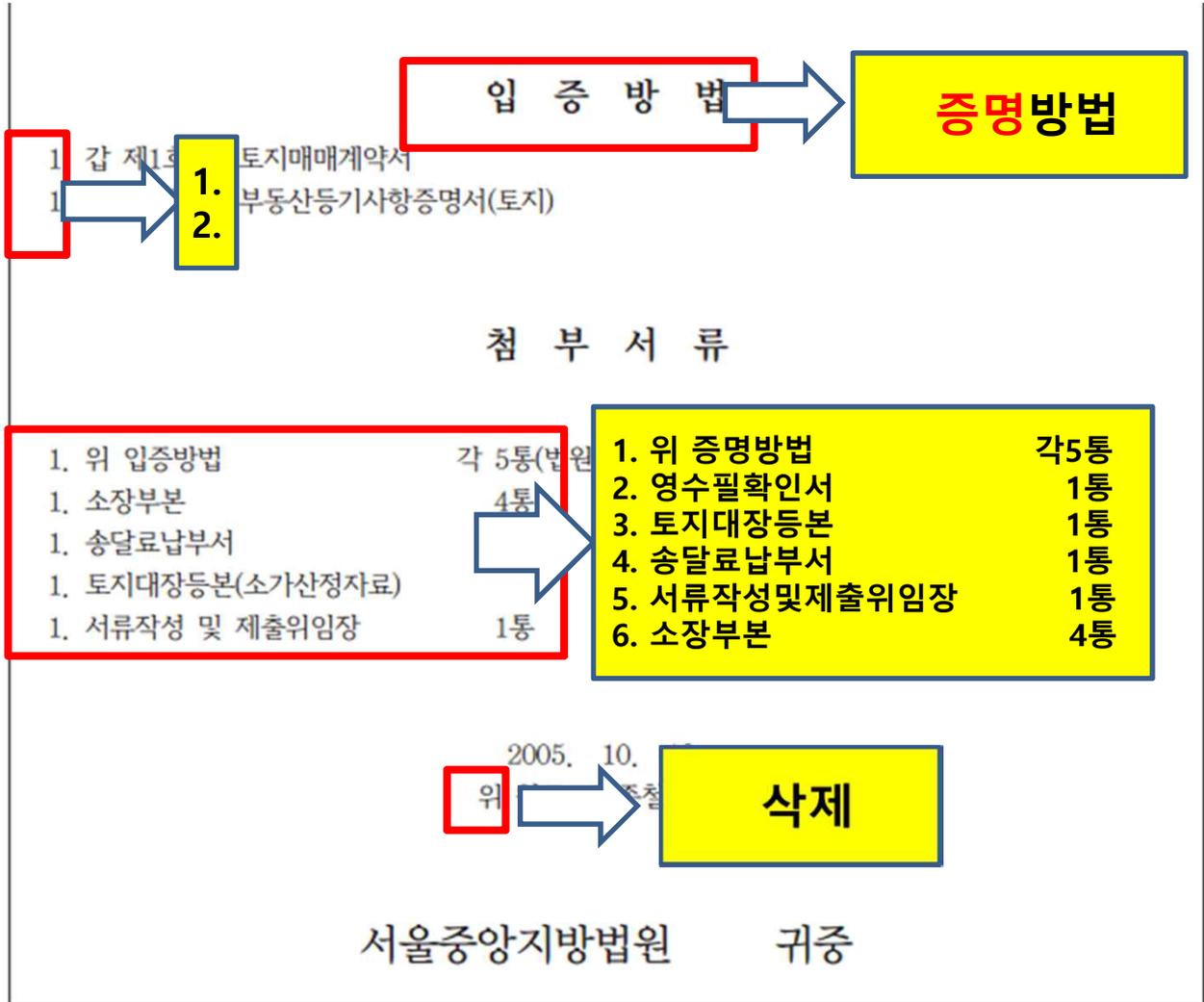
- 1. 위 증명방법 각3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송달료납부서 1통
- 4.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5. 소장부분 2통

2008. 9. 17.
위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405 페이지



입 증 방 법

증명방법

- 1. 을 제1호증 (1. 등기부등본)
- 1. 을 (2. 문)
- 1. 을 제3호증 (3. 증명원)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2통
- 1. 반소장 부분 1통
- 1.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 1. 위 증명방법 각 2통
- 2. 영수필확인서 1통
- 3. 송달료납부서 1통
- 4. 서류작성및제출위임장 1통
- 5. 소장부분 1통

2015. 3. 2.
위 피고 분석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